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2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내실있는 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수행인력을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,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3항을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① 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서울특별시의 <u>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① 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<p>제6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<u>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같음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~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 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 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 한 조례」에 따른 의원 공무국 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 음할 수 있다.</u></p>